

수원고등법원 2020. 6. 24 선고 2019나21459(본소), 2019나21466(반소) 판결

[매매물반환청구 · 매매대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0. 6. 24 선고 2019나21459(본소), 2019나21466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9. 11. 13 선고 2018가합13182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, 강성련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원(담당변호사 임용호)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지영

변론 종결2020. 6. 10.

판결 선고2020. 6. 24.

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. 11. 13. 선고 2018가합13182(본소), 2018가합21787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(반소원고)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
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116,887,755원과 2019. 8. 8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

인도 완료일까지 월 6,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(반소피고)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그중 55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,

1) 별지 목록 기재 레이저가공기(이하 '이 사건 가공기'라 한다)를 인도하고,

2) 222,854,400원과 2019. 8. 8.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1일 381,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3) 165,6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546,101,5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
3. 부대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6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 범위

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공기 인도,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, 피고는 이 사건 가공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. 제1심 법원은 본소 중 이 사건 가공기 인도 청구 전부, 손해배상 청구 일부와 반소 일부를 인용하고, 본소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중 손해배상 인용 부분에 대하여, 원고는 본소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. 따라서 이 법원은 본소 중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과 위약금 청구 기각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.

2.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'이 사건 가공시'를 '이 사건 가공기'로 고쳐 쓰고,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의 이 사건 가공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.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(다만 본소 중 이 사건 가공기 인도 부분 및 반소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).

3.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

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'제6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인도 후 반환 시까지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'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기 인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. 12. 1.부터 위 가공기 인도 완료일까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나.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사용료

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가공기의 월 사용료는 7,632,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 그런데 감정인은 월 사용료를 7,632,000원으로 보면서도 1일 사용료를 1개월의 일수가 아닌 이 사건 가공기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영업일 20일로 나누어 381,600원(=7,632,000원 ÷ 20일)으로 감정하였다. 감정인이 산정한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1개월 사용료를 계산하면 11,448,000원(=381,600원 × 30일)이 되어 감정결과상 월 사용료 7,632,000원을 초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.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가공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결과상 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.

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구하는 2017. 12. 1.부터 2019. 8. 7.까지 154,363,354원[= 7,632,000원 × (20개월 + 7/31)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]과 2019. 8. 8.부터 이 사건 가공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,632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(피고는 2020. 6. 12.자 참고서면에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기를 인수해 갈 것을 최고하였으므로 2019. 11. 19. 이후부터는 원고의 인수 지체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가공기는 집진기 배관 등을 해체 후 인도하여야 하므로 피고 주장의 인수 최고만으로 피고가 위 가공기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지체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).

다.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

1)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시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(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1다31189 판결 등 참조).

2) 민법 제398조 제2항은 "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에서 '부당히 과다한 경우'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, 계약의 목적과 내용,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,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, 예상 손해액의 크기, 거래관행과

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.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,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 참조).

3) 앞서 든 사실,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영상 또는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가공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월 6,500,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.

① 사용료 감정은 이 사건 가공기가 정상 제품임을 전제로 하였다. 그런데 제1심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㉠ 이 사건 가공기의 헤드 하부 온도 상승은 제품생산력 감소와 품질 저하에 영향을 준다. ㉡ 이 사건 가공기 중 그리드 제작이 일부 잘못되어 강제로 결합시켜 놓은 상태여서 사용자가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. ㉢ 배기 경로 부하 등으로 집진기를 통한 원활한 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.

② 한편 그리드는 소모품으로 두께를 수정하는 등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제작상 잘못으로 현재까지 교체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.

③ 원고는 2017. 5. 20.경 이 사건 가공기가 설치된 이후 2017. 12. 12.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가공기를 2,388시간 작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(2019. 7. 8.자 원고 준비서면 제11면). 이 사건 가공기 설치 이후 2017. 11. 28.까지 위 가공기의 헤드부분 온도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한편 피고는 감정일인 2019. 4. 16. 기준으로 이 사건 가공기를 총 5,322시간 작동하였다(갑 제15호증). 2017. 12. 12.까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가공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2,388시간(월 평균 약 341시간) 작동한 것에 비해, 그 이후로 1년 5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가공기를 2,934시간(월 평균 약 172시간) 밖에 가동하지 못하였다.

④ 비록 이 사건 가공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이 사건 가공기 작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.

⑤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17. 12. 1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의 약 26개월 동안 사용료 상당액 198,432,000원(= 26개월 × 7,632,000원)은 정상 제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공기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액 828,000,000원의 약 24%이고, 해당 기간 동안 감가상각률을 고려한 위 가공기의 가치 손실액 161,460,000원(= 828,000,000원 × 연간 감가상각률 9% × 26/12)의 약 123%에 해당한다.

라. 소결

1) 2017. 12. 1.부터 2019. 8. 7.까지 감액된 이 사건 가공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31,467,741원[= 6,500,000원 × (20개월 + 7/31)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]이다. 한편 인용한 제1심 판결 3의 다. (3)항에서 보듯이 위 131,467,741원 중 14,579,986원은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다.

2)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. 12. 1.부터 2019. 8. 7.까지 이 사건 가공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16,887,755원과 2019. 8. 8. 위 가공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,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금전 지급에 관한 원고의 본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고, 나머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본소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남성민

판사허양윤

판사정현식

별지